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(감사)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감사)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,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5조 (삭제)</p>	<p><u>제5조(감사)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